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 895호 2012. 7. 31(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216호) 2
-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제2012-217호) 10
-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248호) 13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277호) 18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2-67호) 26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2-69호) 28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2-70호) 30

◀ 공 고 ▶

-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제2012-1262호) 32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216호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 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간접·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시민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금연구역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안 제6조)
- 마.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별표)
- 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금연구역에 흡연장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사. 금연교육 지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금연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 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보건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70-3263, FAX : 270-3270)
 - 나. 제출기관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790-722)
포항시청 보건정책담당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시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 각 호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장소
- 2.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지정 고시한 시행일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1. 표시방법

- 가. 안내표지판은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스탠드형 및 스티커형을 선택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 부착하고 모양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달리할 수 있다.
-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 가.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 나. 금연구역의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예시) “이 공원(정류소)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 흡연구역 로고 및 표시



- (예시) 흡연구역외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라.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 마. 표지판 하단 중앙에 포항시 심벌마크를 표시 할 수 있다.

3. 설치 및 관리기준

- 가. 안내표지판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 다. 금연구역이 변경·해제 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 한다.
- 라. 안내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포항시 공고 제2012-217호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지 않아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보건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70-3263, FAX : 270-3270)(☎ 790-722)

나. 제출기관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보건정책담당관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포항시 공고 제2012-1248호

공 고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 적법하게 변경(안 제13조의2)

3.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7월 25일 ~ 8월 15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12. 8.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전통시장담당)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전통시장담당)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790-722)

○ 전화 054-270-2435, FAX 054-270-2420, 이메일 aledma007@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명하고” 를 “명 할수 있고” , “명하여야 한다” 를 “명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공고 제2012-1277호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 조례 중 상위 법과 상충되는 조항 및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개정 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

- 조례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대·폐차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조례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2.12.31까지로 명시하고 모호 규정 명확화

나. 필요 없는 조문 폐지

- 조례 제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은 2011.12.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조례로 규정 불필요

다. 일몰기한 명시(보칙)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자치단체 감면 조례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일몰 기한이 명시된 규정 이외에는 일몰기한을 2014.12.31까지로 명시

3.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4. 참고사항

-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2593(2012.3.27)호 참조

5. 조례안 : 붙임

6. 입법예고 : 2012년 8월 1일 ~ 2012년 8월 21일(20일간)

7. 의견제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483, 팩스 054)270-2490, 이메일 phtax@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예고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30일 이내에” 를 “60일 이내에”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개별조항에서 적용시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1. ~ 4. (생략) ② (생략)</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 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 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포 항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 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u>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 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u></p>	

관 련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생 략)
-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67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7. .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영차고지
- 명칭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장
-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최대림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10,930m² ○ 건축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 1,566.64m² -변경 : 1,588.18m² ○ 건축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 2,280.06m² -변경 : 1,835.7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10.7.30 ~ 2012.6.30 ○ 변경 2010.7.30 ~ 2012.12.10 	포항시장 영남에너지 서비스(주) 최대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변경없음(계재생략)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54-270-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2-6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7. .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용한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시설)사업
- 명칭 : 대로2류36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장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포항도시계획 시설(도로시설) 사업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산13-30) ~ 용한리 (산661-4)일원	○ 도로개설 L=1.9km, B=30m	2009.01.12 ~ 2011.12.30	2009.01.12 ~ 2012.06.14	포항시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산업단지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산업단지지원과(054-270-3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2-7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7. 31.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2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 명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연구시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이효숙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연구시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213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76,766㎡ ○ 건축면적 : 5,411.88㎡ ○ 건축연면적 : 6,960.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10.6.24 ~2011.11.30 ○ 변경 2010.6.24 ~2013.12.31 	포항시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변경없음(계재생략)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기업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기업유치과(☎054-270-242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2-1262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항시 양식어업면허 제19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등양식어업(수하연승식)
어 업 권 자	주 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가곡남길 21-4
	성 명	전영환외3명
	주민등록번호	531206-1*****
어업면허기간		2006. 5. 24. ~ 2016. 5. 23.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2.55ha)
처분 년 월 일		2012. 7.27.
면허번호		포항 양식어업면허 제15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등양식어업(수하연승식)
어 업 권 자	주 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가곡남길 21-4
	성 명	전영환외3명
	주민등록번호	531206-1*****
어업면허 기간		2006.05.07. ~ 2016.05.06.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3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면허(2.75ha)
처분 년 월 일		2012. 7.27.

면허번호		포항 제179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합양식어업(수하연승식)
어 업 권 자	주 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가곡남길 21-4
	성 명	전영환외3명
	주민등록번호	531206-1*****
어업면허 기간		2012. 7. 27. ~ 2022. 7. 26.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지선
처분 내역		어업면허(2.55ha)
처 분 년 월 일		2012. 7. 27.
면허번호		포항 제180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합양식어업(수하연승식)
어 업 권 자	주 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가곡남길 21-4
	성 명	전영환외3명
	주민등록번호	531206-1*****
어업면허 기간		2012. 7. 27. ~ 2022. 7. 26.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지선
처분 내역		어업면허(2.75ha)
처 분 년 월 일		2012. 7. 27.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2년 7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7. 30.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7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북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상유해영양물질	5. 불소(F)	1.5mg/l이하	0.20	불검출	불검출	0.2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0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0.9	1.5	1.9	0.8	1.5	0.5	0.6	2.0	2.1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5	0.02	0.02	0.06	0.02	0.01	0.02	0.04	0.03
건상유해영양물질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진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소독수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68	0.60	0.54	0.67	0.59	0.57	0.58	0.44	0.82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68	0.038	0.038	0.052	0.058	0.033	0.039	0.026	0.023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5	0.029	0.030	0.030	0.049	0.022	0.017	0.014	0.020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23	0.009	0.008	0.016	0.009	0.010	0.014	0.008	0.003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10	불검출	불검출	0.006	불검출	0.001	0.008	0.004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원기예양부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복류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등지의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80	58	61	81	92	34	64	105	82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2.5	1.9	2.1	2.7	3.0	1.3	2.4	1.9	3.9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6.7	6.6	6.7	6.9	6.7	6.2	6.3	6.5	7.2	
	45.아연(Zn)	3mg/ℓ이하	0.006	불검출	불검출	0.002	불검출	0.005	0.003	0.165	0.003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32	11	13	36	9	13	25	18	10	
	47.총발산유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99	101	128	241	96	71	138	226	160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8	0.09	0.08	0.09	0.08	0.09	0.09	0.07	0.08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55	15	18	63	14	14	29	49	30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3	불검출	0.04	0.03	0.02	불검출	불검출	0.02	0.02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44	0.39	0.44	0.40	0.41	0.40	0.41	0.35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0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26	0.003	불검출	0.037	0.010	0.007	0.010	0.173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4	11	12	35	9	13	25	18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270-8282,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